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키관 등록 및 관리 규정

제 정 2023. 6. 28.

개 정 2025. 8. 7.

개 정 2026. 4.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에 따라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의 외부검토키관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녹색채권(이하 “녹색채권“이라 한다)”이란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녹색채권을 말한다.
2.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녹색채권 발행절차, 외부검토키관 등록제 등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라 한다)”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녹색분류체계를 말한다.
4. “외부검토키”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자가 녹색채권 발행 전 작성한 녹색채권 관리체계 및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요청서와 녹색채권 발행 후 채권 만기일 또는 상환일 전에 작성한 사후(최종)보고서에 대한 제3자의 검토키 또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채무자 또는 금융회사가 녹색여신을 취급하고자 할 때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받는 제3자의 검토키를 말한다.
5. “발행자”란 녹색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금조달 수요를 확인하고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적합성판단”이란 해당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관리제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외부검토기관”이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외부검토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신청기관”이란 외부검토기관 등록을 위해 관리기관에 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녹색여신”이란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의하는 여신을 말한다.
11. “녹색분류체계 심사원”이란 「녹색분류체계 심사원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심사원을 말한다.

제3조(관리기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부검토기관 등록 접수
 2.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3. 외부검토기관 심사 결과 통보
 4. 외부검토기관 갱신
 5. 외부검토기관 등록 확인서 발급
 6. 외부검토기관 등록 변경·취소
 7. 외부검토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8.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9. 외부검토기관 목록의 공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등 기타 외부검토 등록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외부검토기관) ①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녹색채권 발행 전 발행자 녹색채권 관리체계 외부검토
 2. 녹색채권 발행 전 발행자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확인
 3.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작성
 4. 발행자의 사후(최종) 보고서에 대한 외부검토 보고서 작성
 5. 외부검토에 필요한 현장방문
 6.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른 녹색여신 취급 관련 적합성판단 및 외부검토 보고서 작성
 7. 그 외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과 관련된 업무
- ②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양식 등 세부사항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및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외부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외부검토기관의 등록 및 갱신
 2. 외부검토기관 등록의 취소
 3.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및 결정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전문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 환경부 관계 공무원, 관리기관 담당 부서장
 2. 선임직 : 환경, 금융, 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단,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할 수 있다.
-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척할 수 있다.

1. 심사 대상 안전의 당사자
2. 제1호의 사람과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3. 심사 안전 대상에 대하여 심사, 심의,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했던 사람
4. 심사 대상 기관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⑥ 관리기관의 장은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 대상 안전의 당사자와 제4항 각 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심사 대상 안전의 당사자에게는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제외여부는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 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 ⑦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관리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대면 원칙으로 하되, 심사 안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면 심사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⑨ 관리기관의 장은 심사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⑩ 심사위원회는 관리기관 소속의 1인의 간사를 둔다.
- ⑪ 심사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외부검토키관 등록신청 및 신청제한) ① 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등록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표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외부검토키관 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최근 3년 동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7조(외부검토키관 등록신청 접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 및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기관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등록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외부검토키관 등록 심사 및 결과통보)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외부검토키관 등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검토키관 등록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심사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로 외부검토키관 등록 적합을 통보받은 기관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외부검토키관 등록기간은 제3항에 따른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 주기는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외부검토키관 갱신) ① 외부검토키관의 장은 지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갱신 절차는 등록 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으로 인한 등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0조(외부검토키관 등록만료) ① 외부검토키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부검토키관의 등록은 등록기간 종료일에 만료된

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만료된 외부검토키관은 해당 일자로 외부검토키관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등록기간 만료 이후에도 신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제11조(외부검토키관 등록 확인서 발급)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외부검토키관으로 등록하거나 제9조에 따라 갱신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검토키관 등록 확인서를 외부검토키관의 장에게 발급한다.

제12조(등록의 변경) ① 외부검토키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즉시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인해 외부검토키관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검토키관 장에게 변경 사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충분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상호협약하에 제출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외부검토키관 등록의 취소)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검토키관의 등록 취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등록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등록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검토키관으로 등록한 경우
3. 외부검토키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해당 기관의 충분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4. 등록 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외부검토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7.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 8. 등록 후 2년 이내에 제2조제4호에 따른 외부검토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 9. 그 밖에 외부검토기관 등록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 취소 여부를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 시 관리기관의 장은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검토기관 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출석시켜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외부검토기관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지체없이 외부검토기관 등록 확인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가 결정된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취소 통보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8조, 제1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또는 정보 요청)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외부검토와 관련된 설명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 외부검토의 착오·오류·미흡 등
- 2. 외부검토기관의 등록 요건 충족 확인

3. 외부검토 수행 실적 및 건수

4.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근거, 증빙자료 또는 참고자료

제16조(중간점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부검토기관의 등록 기간 내 등록요건 유지 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요건 사항

2. 제13조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 사항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중간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현장점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검토기관의 사무소에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본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3. 그 밖에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일정과 장소 등을 5일 전까지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8조(외부검토기관 목록의 공개)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외부검토기관의 목록을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외부검토의 수행 및 관리·심사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환경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한 외부검토포기관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한 외부검토포기관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유예) 별표 등록요건 중 '녹색분류체계 심사원 자격증 보유'에 대해서는 기존 등록된 외부검토포기관에 한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키관 등록요건

구 분	주요 내용										
등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외부검토 담당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부서, 팀(파트) 단위의 외부검토를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검토 담당 조직은 환경 및 금융 분야별 1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중 최소 1인 이상 '녹색분류체계 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할 것 <p style="margin-left: 20px;">- 환경·금융 각 분야 인력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50%;">환경*</th> <th style="width: 50%;">금융**</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td> <td style="padding: 5px;">금융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td> </tr> <tr> <td style="padding: 5px;">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td> <td style="padding: 5px;">금융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td> </tr> <tr> <td style="padding: 5px;">환경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td> <td style="padding: 5px;">금융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td> </tr> <tr> <td style="padding: 5px;">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td> <td style="padding: 5px;">금융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td> </tr> </tbody> </table>	환경*	금융**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금융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환경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환경*	금융**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금융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환경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학위 요건 : 대기, 수질(지하수 포함),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생태학 포함), 소음·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기후과학, 자원관리, 에너지 정책 등 환경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나. 경력 요건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리, 환경기술 개발, 환경영향평가, 환경기준·정책 수립 또는 이행 등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학위 요건 : 재무, 회계, 경제, 경영 등 금융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나. 경력 요건 : 기업 또는 은행,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재무, 회계 등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ESG 또는 지속가능 금융 관련 업무 경력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검토에 필요한 직업적·윤리적 원칙 준수할 것(ECAI, ISAE 3000, ISO 17021, ISO 14065 등) * 공인된 국제원칙 미준수 시 별도 증빙 필요 										
취소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외부검토키관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3년 동안 100만 원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키관 등록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				
	연락처	전화		휴대폰	
		Fax		E-mail	
등록요건 / 증빙자료	1. 국내 소재 사무소 ⇒ (증빙)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2. 독립된 외부검토 담당 조직체계 ⇒ (증빙) 조직도, 조직도 구성 규정·지침			<input type="checkbox"/>	
	3. 환경 및 금융 분야별 1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 ※ 전문인력 중 최소 1인 이상 '녹색분류체계 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할 것 ⇒ (증빙) 인사 발령서(조직 구성원 업무분장표), 이력서, 학위 증명서, 해당기관 재직·경력증명서, [별지 3호 서식] 경력(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세부 기술서 및 요약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input type="checkbox"/>	
	4. 외부검토에 필요한 직업적·윤리적 원칙 준수(ECAI, ISAE 3000, ISO 17021, ISO 14065 등) ※ 공인된 국제원칙 미준수 시 별도 증빙 필요 ⇒ (증빙) 준수 확인 관련 내부공문 또는 자체 원칙 문서			<input type="checkbox"/>	
	5.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증빙) 법률 위반사항 등 관련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공문			<input type="checkbox"/>	
<p>위와 같이 외부검토키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첨부 등록요건 관련 증빙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기관 :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대 표 자 : _____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p>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은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제17조제1항제1호(제3자에게 제공)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수집·이용 목적

- 가.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 나. 등록의 변경·갱신·취소에 관한 사무
- 다. 확인서 발급 및 외부검토기관 목록의 공개에 대한 사무
- 라. 자료 요청 및 중간점검, 현장점검에 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등
- 나.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다.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참여 인력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제공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관리
- ③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부서, 직위)
- ④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전문인력

※ 전문인력 보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개인정보가 공개되시는 분은 모두 작성 부탁드립니다.

소 속		생년월일		연락처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성 명			서 명		

소 속		생년월일		연락처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성 명			서 명		

소 속		생년월일		연락처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성 명			서 명		

소 속		생년월일		연락처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성 명			서 명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첨] 담당업무 세부 기술서 및 요약서

(담당업무 세부 기술사항)

연번	담당업무	세부 기술사항	근거(증빙)서류
1	환경 컨설팅		
2	폐기물		
3	상하수도		
4	환경정책		
5	녹색경영		

※ 담당업무 세부사항은 신청 등록기관의 전문인력 해당 대상자의 분야별 경력사항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증명할 수 있도록 주요 담당업무 및 경력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담당업무 세부사항에 관한 근거(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 요청하거나 제출할 수 있음

(신청 등록기관 요약서)

위 담당업무 세부사항에 대해 외부검토키관 등록 심사위원회의 검토·심사 등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외부검토키관 등록요건의 경력사항 검토를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재직) 증명서와 담당업무 세부 기술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약약합니다. □

또한, 기재된 경력(재직)사항과 담당업무 세부 기술사항이 실제와 상이하거나 위조로 판명될 경우에는 외부검토키관 등록·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등록 심사서

신청기관	
------	--

등록요건 검토

구분	주요 내용	적합 여부	특이사항
1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할 것		
2	독립된 외부검토 담당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외부검토 담당 조직은 환경 및 금융 분야별 1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전문인력 중 최소 1인 이상 ‘녹색분류체계 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할 것		
4	외부검토에 필요한 직업적·윤리적 원칙 준수할 것		
5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검토 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심사 의견

심사위원

★ 본인은 본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기관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및 수령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기간은 물론 심사기간 이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발급번호 : 2023-000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키관 등록 확인서

기 관 명 :

대표자명 :

등록기간 : 0000.00.00 ~ 0000.0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위 기
관을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키관으로 등록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키관 등록 취소 심사서

신청기관

1. 심사안건

2. 심사결과

심사내용	심사결과	
	가	부

3. 심사의견

※ 심사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하며, 심사결과를 '부'로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